사립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(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) 제3항에 "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"고 규정하고 있고,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정관 제43조(임면) 제3항에 조교수는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하고 제5항에 교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, 대학에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교원은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퇴직한다 할 것이며, 또한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다시 임용하는 것은 법리상 신규임용인 것이며 그 신규임용이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권자의 법적의무로 규정된 경우라면 재임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대학교원이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권자의 부작위로 인한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겠으나, 사립학교법상 그러한 규정은 없는 것이다.

따라서 청구인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1996.2.29.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퇴직하였다 할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임용탈락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"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"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우리 위원회의 재심 청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.

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1996. 4. 23

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

위원장 이 수 종

위	원	염 상 원
위	원	조 용 락
위	원	양 승 두
위	원	한 상 국